

전자거래를 위한 전자어음의 효율적 운영 방안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Effective Operations of Electronic Promissory Note for Electronic Transaction

최준호(Jun-Ho Choi)

관세사회 선임연구원

목 차

- | | |
|-------------------------|----------|
| I. 서 론 | V. 결 론 |
| II. 전자어음의 이론적 고찰 | 참고문헌 |
| III. 전자어음의 주요 처리 절차와 내용 | Abstract |
| IV. 전자어음의 효율적 운영 방안 | |

Abstract

Electronic Promissory Note started to reducing complexity in paper Promissory Note.

In Recent the electronic documents and signature have the same validity as per documents and handwritten signatures.

The movement of dematerializing promissory note is becoming common, and the National Assembly proposed Electronic Promissory Note Act of 2001 which is now being discussed in Korea.

Especially the Electronic Credits is now becoming the most important means for payment of the business procurement both in on-line commerce and off-line commerce.

Electronic Promissory Note has the same legal effect as the promissory note except that the Act provides to the Electronic Promissory Note specially.

Key Words : Electronic Promissory Note, Promissory Note, Electronic Promissory Note Act

I. 서론

복잡한 처리체계를 가진 어음이 완전하게 전자화 되는 어음을 세계 최초로 인터넷 상에서 발행해 유통하는 전자어음제도가 도입되었다. 전자어음은 2005년 9월 27일 (주)삼진건설에서 제1호 전자어음이 발행되어 본격적으로 발행·유통되게 되었다. 전자어음은 발행부터 교환에 이르기까지 모든 어음행위가 관리기관의 전산시스템 내부에서 전자적으로 이루어지는 약속어음이다.

실제 전자수표는 미국 등에서 부분적으로 시범 실시되고 있으나 전자어음은 아직 발행하여 시행하는 나라가 없다. 우리나라의 법무부는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어음법)”이 발효되자 전자어음관리기관으로 금융결제원을 지정하고, 전자어음 실시준비단을 구성하여 전자어음의 발행·유통을 준비해 왔다.

전자어음을 발행하려는 고객은 (거래은행)과 전자어음 이용에 필요한 약정을 체결한 뒤 인터넷뱅킹 홈페이지에서 수취인, 금액, 만기일 등을 기입하고 공인인증서로 전자서명을 하면 된다. 만기일은 발행일로부터 1년²⁾을 넘길 수 없고 배서는 20회까지 할 수 있다.

전자어음은 인터넷에서 발행되어 금융결제원 공증 아래 유통되기 때문에 어음의 위변조를 원천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 요인이 될 것으로 기대되며, 물류비용이 획기적으로 절감되고, 분실위험이 방지된다. 또 어음거래의 실명화로 인해 금융질서가 확립되고, 전자거래에 부합하는 디지털 환경이 조성되어 기업경쟁력이 강화될 것으로 보여 진다. 또한 전자어음을 이용할 경우 은행을 방문하지 않고도 집이나 사무실에서 발행이나 지급제시를 할 수 있다. 특히 어음기재사항의 오류가 감소하고 유통배서가 사라져 어음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전자어음은 일반어음과는 분명한 차이가 있다. 일반어음과 수표는 유가증권이지만 전자어음은 유가증권이 아니다. 따라서 부도를 낸 사람에 대한 책임추궁면에서 유가증권보다 약하기 때문에 형사적 처벌이 어렵고 민법과 상법상의 책임만 물을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유가증권이 아니기 때문에 유통도 불가능하다. 다만 이를 담보로 주거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는 것은 가능하며 대출은 현재의 어음할인 방식과 비슷하게 이뤄진다.

이용절차는 편리해지지만 납품업체 입장에서는 지급보다 더 큰 위험을 떠안게 되는 셈이다. 은행이 대출을 해주지 않으면 장기간 돈이 묶을 수 있고, 부도났을 때도 별다른 대책이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전자어음은 여러 가지 장점과 기대효과에도 불구하고 세계 최초로 시행되는 제도인 만큼 몇 가지의 문제점이 노출되었다. 이에 본 고에서는 전자어음의 도입에 따른 국내발행과 유통의 활성화를 위해 기존의 전자어음에 관한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문제점과 효율적 운영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 1) 전자어음은 당좌예금을 취급하는 18개 은행에서만 이용할 수 있으며, 현재는 참가은행의 의사표시를 보인 은행에서만 서비스가 가능하다. 전자어음을 발행하려면 참가은행 중 한 은행에서 당좌거래약정을 체결해야 이용할 수 있다.
- 2) 기업어음(체)의 경우 만기 1년을 초과하여 발행 할 수 없는 점을 고려하여 전자어음도 만기를 1년 초과 할 수 없도록 규정하였다. 만기 제한을 1년으로 했다고 해서 기업간에 주고받는 어음의 만기가 현재보다 길어지는 것은 아니며, 만기일을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1년을 초과하는 전자어음의 발행은 불가능하다.

II. 전자어음의 이론적 고찰

1. 전자어음의 의의

1) 전자어음의 개념

전자어음은 전자어음법에 의하여 실물경제에서 사용되는 종이 약속어음 대신 전자어음 관리기관에서 전자문서로 작성되어 등록·발행·배서·지급제시되는 전자유가증권이다.³⁾

전자어음은 기존 어음처럼 발행하는 사람이 일정한 금전의 지급을 약속하거나 또는 제3자에게 그 지급을 위탁하는 유가증권인 실물 약속어음을 전자적 정보인 전자문서 형태로 바꾸어 놓은 것이다. 또한 전자어음법에 의하여 배서회수는 20회로 제한⁴⁾하며, 지급기일은 발행일로부터 1년을 초과할 수 없으며,⁵⁾ 약속어음을 전자적으로 바꾸어 놓은 것에 불과한 것으로 약속어음 및 환어음에 이은 제3의 어음이 아니라 기존의 어음과 병행 사용된다.⁶⁾

그리고 수표가 전자환어음과 같이 지급위탁증권임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미국에서 전자적으로 이용되고 있는 것은 환어음의 지급인과는 달리 수표의 지급인은 은행으로 한정되어 있다는 점에서 수표의 유통성이 보호될 수 있어 이용되는 것으로 보인다.⁷⁾

〈표 II-1〉 전자어음과 종이어음의 비교

구분	종이어음	전자어음
작성	수기작성	전자문서로 발행
서명	인감날인	전자서명(공인인증서)
전달	반드시 인편을 통해 전달	인터넷을 통해 발행 및 배서, 수신
접수	수작업 분류 및 입력작업	시스템을 통해 데이터 수신, 관리
관리	자료 확인 및 편철 수작업	받을 어음, 결제어음, 어음번호별 다양한 조회기능으로 관리 각종 명세서 출력 및 관리 가능

3) 전자어음법 제2조 2항

4) 전자어음법 제6조 5항

5) 전자어음법 제7조 5항

6) 전자어음법은 전자어음만의 사용을 강제하는 것이 아니며, 기업이 원하는 대로 현행 종이어음과 전자어음을 병행하여 사용할 수 있다.

7) 양석완, “전자어음의 전자문서성과 증거법상의 문제”, 『동아시아논총』, Vol.15.No.1, 제주대학교 동아시아연구소, 2004. p.186

구분	종이어음	전자어음
보관	은행과 기업 별도 보관 공간 필요 (위조, 변조, 도난, 분실의 위험)	금융결제원 전산망에서 5년간 무료 보관 위조, 변조, 도난, 분실 원천 방지
지급제시	만기일에 맞추어 은행 방문, 지급제시	은행방문없이 자동지급 제시
존재형태	서면	전자문서
종류	약속어음 및 환어음	약속어음
적용법률	어음법	전자어음의발행및유통에관한법률
발행등록	은행에서 어음용지를 교부받아 발행	전자어음관리기관에 등록
발행, 배서방법	기명날인 또는 서명	전자문서에 전자서명
배서제한	무제한	총 배서회수 20회
만기제한	무제한	발행일로부터 1년
관리기관	없음	전자어음관리기관(법무부장관 지정)

자료 : <http://www.supercheck.co.kr>를 참조로 하여 저자가 재작성.

2) 전자어음의 특성

전자어음은 일반어음에 비해 다음과 같은 세 가지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

첫째, 전자어음은 약속어음이다. 전자어음법 제1조는 동법의 목적으로 「이 법은 전자적 방식으로 약속어음을 발행·유통하고 어음상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경제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전자어음이 어음법상의 약속어음임을 전제로 하되, 다만 어음의 발행과 양도가 전자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짐으로 인해 종전의 어음법으로 시행이 불가능한 문제의 해결을 위해 동법이 제정되었음을 밝힌 것이다.

약속어음에 한하여 전자어음으로 할 수 있도록 한 이유는 전자어음법의 입법배경으로부터 이해할 수 있다. 당초 전자어음은 기업간의 어음에 의한 지급거래를 편리하게 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유럽에서와는 달리 환어음은 무역거래에서만 이용되고 국내거래에서는 거의 이용되는 일이 없다. 기업간 지급거래에서는 약속어음이 일반적으로 이용되고 종이어음으로 인한 불편 역시 약속어음에 관하여 생기는 문제이기 때문에 약속어음에 관해서만 전자화의 필요성을 느낀 것이다.

둘째, 전자어음은 전자문서로 작성된 것이다. 전자문서로 발행되고, 배서양도가 행해지며, 어음의 제시, 소구 등의 권리행사가 전자문서로 행해지는 것이다. 이러한 점이 유체물로 발행되고 그 유체물인 상태에서 배서양도가 행해지며, 그 유체물의 소지를 권리행사의 요건으로 하는 종전의 종이어음과는 차이가 있는 것이다. 하지만 전자어음은 출력해서 사용할 수 없으며, 모든 어음상의 권리 행사가 전자어음관리기관의 전자문서에 의해 이루어진다.

따라서 전자어음법은 전자어음을 약속어음으로 인식하면서도 그 존재양식이 전자적 형태를 가진다는 점 때문에 이에 적합한 관리방식을 규정한다는 데에 있다.

셋째, 전자어음은 전자어음관리기관에 등록된 것이어야 한다. 전자어음법 제2조 2호에서 전자어음관리기관에의 등록을 전자어음의 개념요소로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5조 제1항에서 「전자어음을 발행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전자어음을 전자어음관리기관에 등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전자어음에 관한 방식적 규정들을 전부 전자어음관리기관과 연결지어 규정하고 있으므로 전자어음관리기관에 등록되지 아니한 어음에는 전자어음법의 적용이 불가능하다. 그러므로 전자어음관리기관에 등록되지 않은 채 전자문서의 형태로 발행된 어음은 전자어음법상의 전자어음이 아니다.

이러한 어음은 일반 어음법상의 어음인지 여부를 검토할 수 있으나, 어음법상에서의 어음은 유체적 형태의 권리증서임을 요건으로 하므로 이러한 어음은 어음법상의 어음도 아니다. 요컨대 등록되지 아니한 전자어음은 전자어음 혹은 어음으로서의 효력이 없다.

3) 전자어음관리기관

전자어음은 어음법상에서 약속어음의 일종이지만, 그 소재가 어음법이 예상하는 장소가 아니라 전자적 형태의 문서라는 점 때문에 일반 약속어음에서는 볼 수 없는 특수한 관리가 요구된다. 통상의 상업적인 서버를 이용한 일반적인 전자문서를 이용하여서도 전자어음을 발행하고 유통할 수는 있으나, 그렇게 할 경우 전자어음의 무결성이나 증명력이 크게 떨어지므로 지급결제수단으로서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어렵다. 그러므로 전자어음법에서는 법무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전자어음관리기관」이라는 기구를 두어 전자어음의 거래를 관리하게 하고 있다.⁸⁾

전자어음법 시행령에서는 전자어음관리기관의 지정요건에 대해 보다 자세한 규정을 두었는데, 전자어음관리기관은 이용자가 전자어음관리기관의 시스템을 이용하여 안전하게 전자어음을 거래할 수 있도록 ① 정보통신기사 등 정보통신부장관이 인정하는 자격을 갖춘 자, 공인인증업무에 관한 시설 및 장비의 운영 등에 관한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금융업무 또는 신용분석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등 해당분야경력자를 10인 이상 고용하고, ② 100억원 이상의 순자산을 보유하고, ③ 이용자가 전자어음의 등록·발행·배서·보증·지급제시·지급·지급거절증서의 확인 등 권리행사를 할 수 있는 시설 및 장비 등을 갖추도록 하고 있다.⁹⁾

또한 법무부장관은 전자어음관리기관의 기술능력·재정능력·시설 및 장비의 안정운영 여부 등에 관하여 2년마다 정기검사를 하여야 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수시로 전자어음관리기관의 시설·장비·서류와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현재 전자어음관리기관으로 지정된 곳은 금융결제원이며, 전자어음관리기관의 감독은 법무부가 하게 되어 있다.¹⁰⁾

8) 전자어음법 제2조 4호, 제5조 제1항

9) 전자어음법 시행령 제12조

10) 전자어음법은 어음법의 특별법으로 어음법의 주무부처는 법무부이다. 또한 어음법 제83조에서 ‘어음교환소는 법무부

전자어음관리기관은 전자어음의 생성과 이전에 필요한 모든 전자적 정보를 집중관리하며, 전자어음의 발행·배서·보증 등의 어음행위와 지급제시 및 소구와 같은 권리행사가 전자적으로 가능하도록 기술적인 지원을 해 주고 있다.

전자어음관리기관의 기능은 전자문서라는 소재를 관리하는 역할을 함에 그치고, 원칙적으로 어음의 실제적인 법률관계에는 관여하지 않는다. 다만 전자어음의 신용을 확보하고 어음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발행인의 등록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발행인의 신용도를 고려하여 등록을 제한 할 수 있는 제도를 두고 있다.¹¹⁾

2. 전자어음의 참가주체별 역할과 기대효과

1) 전자어음의 참가주체별 역할

전자어음발행기관이란 전자어음법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해 전자어음의 발행, 배서, 지급제시, 거절, 소구, 반환, 거래정지처분 등의 권리행사를 관장하는 기관이다.

전자어음 기술지원사업자란 전자어음법 시행령 제12조 2항에 의해 전자어음사업에 필요한 시설 또는 장비를 보유하고 있거나 그에 관한 권리를 가진 사업자를 의미한다.

〈표 II-2〉 전자어음 참가주체별 역할

구 분	역 할
법무부	· 전자어음관리기관 및 기술지원사업자 지정(전자어음법 제3조 1항) · 전자어음관리기관 및 기술지원사업자 감독 및 검사(전자어음법 제20조)
은행	· 전자어음 발행인(이용자)와 당좌약정/이용자 약정체결 · 인터넷 뱅킹 화면 내에 발행/배서 등 전자어음 관련 메뉴 및 정보 제공 · 부도신고 등 전자어음 제발 결제 관리
전자어음 관리기관 (금융결제원)	· 전자어음 관련 Data 관리 · 보관 · 전자어음 부도회차 관리 및 거래정지처분(어음교환소에 위탁) · 관리기관 인터넷 홈페이지 내에서 배서/조회 관련 전자어음 메뉴 및 정보 제공 · 전자어음분쟁조정위원회 설치 운영(전자어음법 시행령 제16조 제3항)
전자어음기술지원사업자 (한국슈퍼체크(주))	· 전자어음법 시행령 제12조 2항 제3호 규정에 의한 관련시설과 장비 제공

자료 : <http://www.supercheck.co.kr>를 참조로 하여 저자가 제작성.

장관이 지정한다'는 규정과 마찬가지로 전자어음법에서도 전자어음관리기관을 법무부장관이 지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지정권을 갖는 부서가 감독권을 갖는 것이 당연한 것이다. 그 대신에 어음이 금융권에서 이용되고 금융감독위원회가 금융기관 검사권을 갖고 있는 만큼 법무부가 검사권의 일부를 금융감독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에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11) 전자어음법 제5조 제1항

2) 전자어음 도입시 기대효과

(1) 어음거래의 실명화

전자어음은 사용자간에어음거래를 실명화하는 효과를 가지고 있어 기업별 어음발행정보를 바탕으로 재무구조가 취약한 기업의 신용정보 관리를 한층 더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는 기업별로 어음 발행규모를 파악하는 것이 어려워 특정 기업은 자금력이 부족함에도 어음발행을 남발하여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고, 기업가의 도덕적 해이를 유발하는 등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전자어음의 이용이 활성화될 경우 전자어음 관련 정보가 전자어음관리기관에 집중됨에 따라 기업에서도 동 정보를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 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¹²⁾

(2) 위·변조 및 분실 원천방지

2004년 금융결제원에 적발된 위조어음만 4,000여장이고 액면금으로 수천억원 대에 이른다.

그러나 전자어음은 관리기관시스템 내에서만 생성·유통되므로 위조와 변조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다른 정보통신망을 통해서도 관리기관 시스템에 접속이 불가능하도록 하기 때문에 해킹 위험을 원천적으로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3) 물류비용의 획기적 절감

종이어음은 이용자에게는 어음 발행·유통 및 관리에 따르는 비용부담과 은행에게는 어음교환 업무에 인력과 시간이 소요하였다. 그러나 종이어음에 비해 전자어음은 종이어음 사용에 따른 기업과 금융기관의 부담을 절감해 주어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민 편의를 증진시킬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4) 조세탈루 방지 등 거래의 투명성 제고

종이어음은 배서인이 드러나지 않는 유령 배서, 액면금을 정하지 않는 백지어음 등이 시중에 유통되어 조세 포탈 등 부작용이 노출되었다. 하지만, 전자어음은 모든 거래가 실명으로 이루어지고, 거래기록은 일정기간 전자어음관리기관 주전산망에 보존되므로 세금 포탈 등을 목적으로 한 불투명한 거래가 불가능하다. 또한 어음거래의 투명성이 획기적으로 제고될 수 있을 것이며, 건전한 금융거래 정착으로 국가경제와 기업의 신뢰도가 향상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5) 전자어음의 신뢰성 제고

전자어음관리기관(금융결제원)이 어음 발행인의 주거래 은행에 대한 신용평가를 참고해 신용도가 낮은 어음 발행인의 전자어음 등록을 거부할 수 있어 전자어음에 대한 신뢰도도 올라갈 수 있다.

12) 장인수, “전자어음의 도입효과와 활성화 과제”, 「지급과 결제기술」, 제19호, 금융결제원, 2005.1, pp.18-19.

(6)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

전자어음을 이용할 경우 많은 인력난에 시달리고 있는 중소기업이 어음을 수수하기 위해 출장다녀야 하는 불편이 사라질 것으로 보여 매우 유용하다. 전자어음 결제시스템에서는 대기업이 중소기업에 60일 초과 어음의 발행을 금지하는 공정거래법 규정이 종이어음의 경우보다 더욱 철저히 지켜질 것으로 기대되어 중소기업에 많은 점에서 이득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3. 전자어음법의 제정

1) 전자어음법의 도입 필요성

인터넷을 통한 금융거래가 보편화되고 전자거래가 활성화됨에 따라 기업과 소비자간 전자거래에서는 전자자금이체, 신용카드 결제, 휴대폰을 이용한 결제, 전자화폐를 통한 결제 등 소액의 현금결제를 위한 전자결제 방법은 매우 활성화되고 있으나 기업간 전자상거래 및 일반 재화와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금지급은 실물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매우 복잡하고 비경제적인 유통과정을 통하여 통한 현재의 결제방법이 그대로 사용되고 있어 전자결제 방법의 제도적 도입이 절실히 요청되고 있는 현실이다.

현재 어음에 의한 대금결제를 대신하여 구매선용카드, 구매자금대출제도, 전자방식에 의한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 등의 새로운 금융상품이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어음에 의한 외상거래를 은행대출에 의한 현금결제방법으로 대체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어 실물어음의 발행액이 감소하고 관련 금융상품의 대출이 증가하는 등 좋은 결과를 얻고 있다. 하지만 어음은 우리나라 기업의 대표적인 결제수단으로서 신용창조의 기능과 실물경제를 활성화시키는 장점이 있는 제도이다.

따라서 이러한 어음을 전자화하면 ① 조세정의 실현, ② 금융질서 확립, ③ 물류비용 절감, ④ 디지털경제 환경 효과 등의 이점이 예상되기 때문에 실물어음을 전자어음으로 유통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입법이 필요한 실정이었다. 또한 디지털환경 하에서의 전자어음은 고액의 어음을 소액으로 분할하여 배서할 수 있어 기업간 결제에 혁신적인 편리성을 제공하고 있는 전자어음의 도입이 매우 절실한 실정이었다.

결국 전자어음을 일반 상거래와 전자거래에서 디지털환경에 적합한 전자결제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전자어음을 통하여 조세투명성 제고로 조세 정의를 실현하며, 전자화를 통한 물류비용의 절감을 꾀하고, 디지털환경에 따른 기업간 결제의 효율성을 높이는 결제수단으로 활용하고자 하여 2004년 3월 22일에 법률 제7197호로 제정되기에 이르렀다.

2) 전자어음법과 어음법과의 관계

전자어음법 제4조는 「전자어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음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어음법과 전자어음법이 일반법과 특별법의 관계에 있음을 말해 준다.

전자어음법에서는 어음의 소재가 종이에서 전자로 대체된다는 특성에서 비롯되는 기술적인 문제만을 다루고 있을 뿐이고, 어음상의 권리관계에 관한 실체적인 법리에 관해서는 거의 규정하는 바가 없다. 따라서 전자어음상의 어음행위의 방식 및 권리행사를 위한 서면행위는 전자어음법에 의해 규율된다.

전자어음법은 어음의 전자화에 관해서는 전자어음법 제5조의 전자어음을 발행할 때에는 전자어음을 전자어음관리기관에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을 전자등록방식으로 이해하고, 제6조 이하에서 전자어음의 발행·배서가 전자어음의 송수신에 의해 이루어지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은 전자증권방식으로 이해하여 전자어음법이 두 가지 방식을 혼합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전자어음을 전자어음관리기관에 등록하라고 함은 전자어음거래를 전자어음관리기관의 관리하에 두려는 취지에 불과하고 전자어음의 방식을 정하려는 취지는 아닌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전자등록방식이나 전자증권방식이나는 것은 전자화된 유가증권의 존재양식에 관한 문제이므로 그 발행과 유통의 형태를 가지고 판단해야 할 것으로 보여 진다면 전자어음법은 전자증권방식을 취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전자어음법은 전자어음으로서 약속어음만을 대상으로 하고 환어음을 배제하고 있다. 그 이유는 명백하지는 않으나 환어음의 경우에는 수표와 같이 지급위탁증권의 기능을 가지기 때문에 지급인의 어음행위가 추가로 필요한 데서 전자어음의 법률관계가 복잡할 수 있다는 점에 기인하는 것 같다.¹³⁾

Ⅲ. 전자어음의 주요 처리 절차 및 내용

1. 발행 및 등록

1) 전자어음의 발행

전자어음을 발행하려고 하는 이용자는 우선 거래은행과 전자어음당좌예금계약 체결 및 전자어음 이용약정을 체결한 후 회원등록 절차를 거치게 된다.¹⁴⁾ 이때 당좌예금계약 미체결, 어음교환소로부터 거래정지처분 중에 있는 경우 전자어음관리기관은 발행인 등록을 거부할 수 있으며, 이용약정이 체결되었다면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이용자가 사전에 발급받은 공인인증서가 있다면 그대로 사용이 가능하며, 공인인증서 발급 후 거래

13) 나승성, “전자어음의 법적 문제점 검토”, 『인권과 정의』, 제323권, 2003, p.141.

14) 현재 시스템에선 전자어음관리기관을 통해서도 발행인 등록이 불가능하며, 오직 거래은행을 통한 발행인 등록만이 가능하다.

은행 인터넷 뱅킹 홈페이지에서 전자어음의 발행에 필요한 항목(전자어음 금액¹⁵⁾, 만기일자¹⁶⁾, 수취인 정보 등)을 기입하고 공인인증서로 전자어음을 발행¹⁷⁾한 후 발행수수료를 납부하면 발행 및 등록이 완료된다. 단, 수취인으로 등록한 이용자는 전자어음을 발행할 수 없다.

전자어음을 발행했다면 전자어음의 발행, 보유, 배서, 수령거부 및 반환, 부도의 출력물을 은행별 또는 어음별로 출력을 할 수 있다.

2) 전자어음의 수취

전자어음을 수취하고자 하는 자는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은 후 거래은행에 회원가입 및 전자어음 이용약관을 체결하여야 하며, 수취인 등록을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수취인의 이름, 계좌번호, 사업자번호 또는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이며 이외에 은행별로 필요사항이 추가될 수 있다. 또한 어음대금을 만기에 여러 은행계좌로 입금받고자 할 경우에는 각 은행별로 수취인 등록을 하여야 하며, 당좌예금계약 미체결, 거래정지처분 대상자라도 전자어음의 수취는 가능하다.

수취인은 금융기관(은행) 인터넷 뱅킹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전자어음의 발행 여부 확인 및 관련 내용을 조회하여야 한다.¹⁸⁾ 조회결과 이상이 있을 경우 수령거부가 가능하며, 본인인증이 가능한 공인인증서에 의해 본인인증절차가 이루어진다면 발행된 어음의 수취거절은 언제든지 가능하다.

2. 배 서

1) 전자어음의 배서

전자어음에 배서하고자 하는 배서인은 우선 배서관련 양식을 작성하여 전자어음관리기관에 송신하여야 한다. 전자어음관리기관에 송신이 완료되었다면 다음으로 전자어음에 배서의 뜻을 기재한 전자문서를 첨부하여 피배서인에게 송신하여야 한다. 이러한 배서인의 배서행위는 전자어음관리기관의 홈페이지를 통하여 할 수도 있고, 은행 인터넷뱅킹에 접속하여 배서할 수도 있다.¹⁹⁾

15) 전자어음법에서 이용자의 발행 총 한도금액을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법 제5조 제2항), 기존의 종이어음에는 발행 총 한도액의 제한이 없고, 전자어음이 종이어음과 병행 사용됨으로 인하여 시행초기에 전자어음에 발행 총 한도액을 제한하지 않도록 하였다.

16) 전자어음의 최소만기일은 발행일 이후 2영업일이고, 최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17) 전자어음 수취인은 전자어음 발행 전에 거래 은행에 회원가입(이용자 등록)되어 있어야 한다.

18) 발행된 어음의 조회업무는 크게 전자어음관리기관을 통한 조회와 은행을 통한 조회로 나눌 수 있다. 전자어음관리기관의 홈페이지를 통하여 발행인과 수취인은 각각의 내역 및 정보의 조회가 가능하며, 은행 인터넷뱅킹을 통하여서도 조회가 가능하다. 조회시에는 주민등록번호와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여 조회가 가능하며, 이때 입력된 번호에 따라 개인별, 법인별, 정보사항의 내역이 달라지게 된다.

19) 발행된 어음의 배서는 발행 후부터 가능하며 만기일 2일전까지 가능하다.

2) 피배서인의 배서확인

전자어음의 배서는 배서인이 보낸 전자문서를 수신한 때에 배서 및 교부의 효력을 발생하게 된다. 효력 발생 후 피배서인이 다시 배서를 할 경우에는 이전에 작성된 배서 관련 전자문서를 전자어음에 첨부하고 배서와 동일한 절차를 거쳐 배서하여야 한다.²⁰⁾ 이때 전자어음의 총 배서회수는 20회를 초과할 수 없다.²¹⁾

3. 만기전 지급제시

전자어음은 전자어음 관리기관에 의해 일괄적으로 만기일 당일 오후 2시 30분 이후부터 출금이 가능하며, 자동지급 제시되는 것이 원칙이다. 단, 발행인이 거래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등 어음소지인이 사전 소구권 행사를 위하여 만기일 전에 지급제시를 하여야 할 경우 등에는 일반적으로 만기 전 지급제시를 금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만기일 전에도 사전 지급제시를 할 수 있다.

그리고 상호간의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만기일 변경은 언제든지 가능하다. 만기일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발행인 및 수취인이 서로 합의를 하였음을 나타내는 문서를 관리기관에 제출하고 관리기관은 그 문서의 진실성 여부를 확인한 후 만기일을 변경하여 줄 수 있다.

전자어음 최종소지인은 거래은행에서 서면으로 만기전 지급제시 희망일자를 기재하여 요청한다. 이때 소지인 거래은행은 만기전 지급제시 요청사실을 증빙서류와 함께 관리기관으로 지급제시 희망일자 전 2영업일까지 요청할 수 있으며, 전자어음관리기관은 은행 요청문서를 근거로 해당 전자어음을 지급제시 희망일자 전 영업일 자동지급제시내역에 포함하여 은행에 지급 제시하여야 한다.

또한 어음대금을 지불할 발행인이 대금을 지급하지 못할 중대한 사항이 발생하거나 우려될 시에도 전자어음법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소구절차를 통하여 만기 전 지급제시가 가능하다. 이때 전자어음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배서전자문서,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거절 전자문서를 첨부하여 소구의 뜻을 기재한 전자문서를 소구의무자에게 송신하여야 한다.

4. 수령거부

수령거부란 수취인(혹은 피배서인)이 발행한 전자어음 관련내역을 조회한 계약조건이 불일치 등의 사유로 해당 전자어음의 수령을 거부하는 행위를 말한다.

20) 어음의 배서시에는 피배서인에게 담보책임을 부담하나 이러한 담보책임을 지지 않는 무담보 배서가 가능하며 무담보 배서란에 체크표시를 하여 발행할 수 있다.

21) 종이어음의 경우 뒷면에 3회의 배서란이 있고, 실체는 부전지를 첨부하여 10회 이상도 배서 유통되는 경우가 있으나 전자어음의 경우 무한정한 배서를 허용할 경우 이를 악용할 수 있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정상적인 상거래에서 이뤄지는 배서에 불편을 주지 않도록 하는 범위를 고려하여 총 배서회수를 20회로 제한한 것이다.

수령거부절차는 우선 전자어음 수취인(또는 피배서인)은 관리기관 인터넷 홈페이지 혹은 거래은행 인터넷뱅킹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전자어음의 수취(배서)여부 확인 및 관련 내역을 조회하여야 한다. 만약에 수령거부를 원할 경우에는 거래은행 인터넷 뱅킹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거래은행 인터넷 뱅킹 홈페이지에서 수령거부 할 전자어음을 선택하여야 한다. 선택된 전자어음은 공인인증서를 통한 전자서명으로 전자어음을 수령거부 할 수 있다.

그러나 전자어음은 수령거부 할 수 있지만, 이미 기 지급된 수수료는 해당행위의 업무처리비용이므로 해당 행위가 완료된 시점에서는 반환이 불가능하다.

5. 소 구

소구란 만기에 어음의 발행인이 어음의 지급을 거절하거나 지급할 수 없는 경우 혹은 만기전이라도 지급의 가능성이 현저하게 불확실하게 된 때에는 어음 소지인은 자기의 전자인 모든 배서인과 그 보증인에 대하여 본래의 지급에 갈음하여 어음금과 기타 비용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

소구는 1회 1인에 한정되며, 최종수취인 및 소구의무를 다한 배서인만이 소구신청이 가능하다. 하지만, 현행 전자어음시스템에서는 부도 전 어음의 소구가 불가능하고 관리기관에 서면으로 요청하여야 한다.²²⁾

예를 들어 발행인 갑은 자기의 전자인 A, B, C의 배서를 통한 을이 최종소지인이 되었다. 그런데 을이 만기에 지급제시한 전자어음이 발행인 갑의 '예금부족'을 이유로 지급이 거부된 경우에 최종소지인 을은 자기의 전자인 A, B, C 중 누구에게 소구권을 행사하여 비용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²³⁾ 전자어음의 경우 오프라인을 통해 소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단, 소구권을 행사하여 소구의무자가 소구의무를 이행한 경우 소구권자는 거래은행 인터넷 뱅킹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소구의무 이행사실을 관리기관으로 통지하여야 한다.²⁴⁾

소구절차는 우선 소구의 이행사실을 통지하기 위해 소구권자는 거래은행 인터넷 뱅킹 홈페이지에 접속하여야 한다. 접속 후 거래은행 인터넷뱅킹 홈페이지에서 소구의무 이행사실을 통지하기 위해 필요한 항목(소구의무이행 내역 등)을 입력하여야 한다. 필요한 항목이 입력되었다면 공인인증서를 통한 전자서명으로 소구의무 이행사실을 관리기관으로 통지한다.

22) 부도 전 소구시에는 어음의 위험성에 대하여 증명 할 자료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 법원의 법적추심권 등의 증빙 서류를 첨부하여야 부도 전 소구가 가능하다.

23) http://www.supercheck.co.kr/solution/sub_01_03.asp

24) 전자어음법 제13조 제2항

IV. 전자어음의 효율적 운영 방안

1. 전자어음의 이용시 문제점

1) 전자어음 거래와 관련한 정보공시

전자어음법 제6조에서는 전자어음의 발행과 관련하여 전자어음에 반드시 기재하여야 할 사항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사업자고유정보도 반드시 기재하여야 할 사항의 하나로 정하고 있다.²⁵⁾

사업자고유정보란 “전자어음과 관련된 당사자의 상호나 사업자등록번호, 회원번호, 법인등록번호 또는 주민등록번호 등 사업자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말한다.”²⁶⁾

이와 같이 사업자의 신원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인 사업자고유번호를 전자어음에 반드시 기재하도록 한 것은 어음행위자의 신원을 명확히 함으로써 유통어음의 발행을 막는 한편 조세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실현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으로 설명되고 있다.²⁷⁾

하지만 한편으로는 최근에 사회적으로 문제시되고 있는 개인정보 노출과 관련하여 기업들이 전자어음관리기관에 대한 신뢰성을 문제 삼을 수 있다. 개인의 정보뿐만 아니라 기업의 중요한 정보까지 외부로 노출된다면 기업의 입장에서는 전자어음을 적극적으로 사용할 이유가 없다.

또한 아직은 초기 단계이므로 전자어음관리기관의 전자어음시스템의 운영에도 문제를 제기할 수 있겠다. 전산장애나, 거래정보 유출 등이 이루어진다면 기업로서는 막대한 손해가 가해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아직 초보단계에 이른 전자어음제도가 정착을 하려면 기업이 믿고 따를 수 있는 전자어음관리기관의 신뢰성이 한층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2) 전자어음의 위·변조와 해킹에 대한 문제

전자어음의 위조는 공인전자서명을 위조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종이어음에 비해 쉽지 않으며, 전자어음의 변조 역시 비대칭 암호화 방법에 의하는 경우에는 위·변조가 기술적으로 검색되므로 위·변조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본다. 또한 비대칭 암호화 방법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종이어음에 비해 위·변조가 어렵다고 본다.

그런데, 전자어음은 전자적 방식으로 양도하기 때문에 전자적 복제의 특성상 배서인이 원본을 관리하는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다. 따라서 배서인은 관리가능한 것을 이용하여 이중으로 양도할 수 있다. 전자어음의 경우 단순한 배서의 연속성뿐만 아니라 어음이 복제본과 구별되는 어음의 유일한 정보임

25) 전자어음법 제6조 4호

26) 전자어음법 제2조 6호

27) 권중호, “전자어음제도의 도입과 법리적 과제”. 『비교사법』, 제10권 제1호, 한국비교사법학회, 2003, p.570.

을 증명하는 즉, 전자어음이 위·변조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전자어음의 유통과 관련하여 중요한 의미를 갖기 때문에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로 보여진다.

또한 해킹에 대한 우려도 있을 수 있겠다. 인터넷이 널리 보급되었지만 개인정보보호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게 우리의 현실이다. 인적사항 등 단순한 개인정보는 물론 작은 용량의 스파이웨어만 심어놓으면 사용자의 ID와 비밀번호까지 낱낱이 알아낼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문제는 우리나라에 국한된 것은 아니지만 중요한 국가기관들이 한꺼번에 해킹을 당해 시스템이 마비되는 사태가 적지 않으므로 아무리 정보보안을 강조해도 부족하지 않다고 하겠다.

3) 기업의 적극적인 참여 부족

전자어음관리기관의 신뢰성에 관한 부분은 기업의 참여 부족으로 이어질 수 있다. 전자어음법 제6조에 따라 정보공개를 한다는 것은 어음거래의 실명화를 통한 투명성 제고, 음성적인 거래차단에도 상당히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 진다.

그러나 제17조 전자어음거래 정보의 제공 등과 맞물림으로써 거래정보의 노출을 꺼리는 기업의 일반적인 성향에 의해 전자어음의 이용을 제약하는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다.

물론 제17조 제2항에서는 이용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이를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고 하고 있지만 전자어음의 적극적인 이용을 기대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볼 수 있다.

4) 온라인 어음할인시장의 부족

전자어음의 활성화를 위한 또 다른 문제로 온라인 어음할인시장의 부족이다. 구매기업 입장에서는 전자어음을 이용할 경우 편리할 수 있지만 판매기업 입장에서는 당장의 자금 유통이 필요한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현재 중소기업은 판매대금 중 40% 이상을 어음으로 받아 은행 또는 사채업자에게서 할인을 받거나, 대금결제에 이용하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활용하고 있다. 중소기업이 발행하는 어음은 사채시장을 통하여 할인 유통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는데 반하여, 전자어음은 그 특성상 사채시장에서의 현금화가 어렵다.

전자어음의 경우 은행할인은 기존방식과 유사하게 이루어질 수 있지만 사채업자가 전자어음을 할인하는 데에는 문제점이 있어 보인다. 따라서 기업이 전자어음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은행중심의 온라인 어음할인시장을 육성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5) 약속어음에 대한 대체성 부족

전자어음법은 전자어음을 약속어음에 국한하고 환어음이나 수표는 그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따라

서 약속어음에 한해 중앙관리기구에 등록함으로써 전자문서로 발행할 수 있는데, 이처럼 전자어음화의 대상을 약속어음으로 국한 한 이유는 ① 전자화에 대한 업계의 요구가 약속어음에 집중되고 있다는 점과 함께 ② 수표의 경우, 특히 자기앞수표는 2000. 10월부터 전자화됨으로써 실물수표의 이동 없이 결제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 그리고 ③ 환어음의 경우에는 국내에서 사용되는 예가 드물다는 점이지만 약속어음에 대한 대체성 부족이라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환어음의 경우에는 국제거래에 수출입대금 결제를 위해 주로 화환어음의 형태로 이용되는 점을 고려하면 국제적인 표준과의 조화라는 측면에서 입법기술상 고려하여야 할 요소가 적지 않을 것으로 생각되나 적어도 수표의 경우에는 당좌수표는 물론이고 현재 부분적으로 전자화되어 있는 자기앞수표도 완전 무권화를 위해 전자수표의 도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특히 기업간 결제에 있어서 수표가 차지하는 비중이 어음에 못지않을 정도로 클 뿐만 아니라 특히 입법기술적으로도 수표의 경우에는 지급위탁증권으로서 현금에 대신하여 사용되므로 지급약속증권으로서 유통을 전제로 하는 약속어음에 비해 배서나 소구제도 등에 있어서 특별히 복잡한 것도 아니기 때문이다.

2. 전자어음의 효율적 운영 방안

1) 전자어음관리기관의 신뢰성 제고

기업들의 전자어음에 대한 이용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시행 초기 이용자들에게 전자어음만의 장점을 부각시키고 새로운 제도에 대한 불안감을 불식시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하겠다. 기업간 상거래는 기업과 소비자간 상거래에 비하여 거래금액이 커서 비대면 결제의 편리성보다는 대면결제의 안전성과 확실성이 우선시 되는 경향이 있다.

전자어음은 관련 정보가 모두 전자어음관리기관인 금융결제원에 집중되어 관리되는데 정보의 집중은 그만큼의 리스크를 수반할 수밖에 없다. 전자어음관리기관이 전자어음시스템의 운영에 만전을 기하지 못한다면 전자어음이 활성화되지 않음은 물론 여러가지 문제점이 야기될 우려가 있다고 하겠다.

또한 비용절감이라는 도입 취지와는 달리 전자어음시스템 구축, 운영에 많은 비용이 소요되는 경우 처리비용이 높아질 수도 있으며, 전산망 장애, 거래정보의 유출 등 실물어음에서 발생하지 않는 예기치 못한 상황도 전자어음의 이용을 막는 장애요인이므로 전자어음관리기관 및 관련시스템에 대한 신뢰성 제고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하겠다.²⁸⁾

2) 전자문서에 의한 위·변조의 위험 해소

전자어음은 전자어음관리기관의 시스템내에서 발행, 배서, 지급제시 되는 것으로 어음상의 모든 권

28) 장인수, 전계논문, p.23

리행사는 전자문서에 의해서만 이루어지기 때문에 위변조의 위험이 전혀 존재하지 않으며, 전자어음 관리기관으로 지정된 금융결제원의 보안체계는 국가정보원의 보안심사에 준하고 있어서 안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고, 현재 시행중인 전자외상매출채권을 이러한 보안체제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전자어음의 경우도 문제가 없다.

또한 배서인이 전자정보를 가지고 있는 기회를 이용하여 이중으로 양도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공인인증기관이 배서인의 배서를 위한 전자서명시 배서인의 전산장치에 남아 있는 전자적 정보를 폐기시키도록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도 하나의 해결방안일 것이다.

더구나 해킹 등의 문제는 전자어음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며, 모든 전자금융에 공통적인 문제로서 풀어나가야 할 문제이다.

3) 기업의 적극적인 참여

전자어음의 이용은 강제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실물어음을 이용할 것인지 전자어음을 이용할 것인지 또는 전자외상매출채권을 이용할 것인지는 기업이 판단할 문제이다.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기업간 거래에서 지급결제수단의 선택은 구매기업이 열쇠를 쥐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대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기업이 전자어음을 이용할 경우 투자자의 신뢰성이 제고되어 기업가치가 더 올라가는 등의 순기능적 측면과 전자어음의 장점을 홍보하고, 기업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별도의 조치를 병행하는 것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기업 입장에서는 전자어음 이용 수수료가 우선적인 관심의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도입 초기에는 이용을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수수료를 인하하는 등의 조치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또한 대기업의 경우 전자어음 관련 정보를 입수하기가 용이하여 전자어음에 대한 이해도가 높지만 중소기업의 경우는 상대적으로 그렇지 못한 현실을 감안하여 중소기업에 대한 홍보도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여기에 정부에서 전자어음을 이용하는 기업에 대한 정책적인 지원 조치가 있을 경우 전자어음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4) 전자어음할인시장을 통한 전자어음의 할인

앞으로는 거래은행 이외에 전자어음할인시장을 통하여 전자어음의 할인이 증개될 예정이다. 전자어음 발행기업의 신용상태에 따라 사채시장보다 저리의 이자율로 전자어음할인이 가능하여 시중 부동자금이 중소기업의 단기 운전자금 조달로 이어져 경제활동이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분할이 도입되면 고액의 전자어음이 소액투자자에게 분할하여 매각될 수 있어 전자어음을 통한 중소기업의 자금조달이 더욱 원활해질 것으로 보인다.

5) 전자수표의 도입

종이로 된 수표를 주고받지 않고 인터넷을 통한 발행과 사용이 가능한 전자수표(electronic checks)가 이르면 올해 안에 도입된다.

전자수표는 수표 발행자와 은행 및 어음교환소 등을 인터넷으로 연결, 인터넷 상에서 전자문서로 된 수표를 발행·유통·지급하는 미래형 새 결제수단이다. 법무부는 수표 정보 및 교환업무 전자화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수표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법률안에 따르면 앞으로는 은행에서 수표를 지급, 제시할 때 반드시 실물수표(종이수표)를 보여줘야 하는 규정은 삭제되고 대신 전자정보를 송수신해 교환업무를 할 수 있게 된다. 또 수표를 추심(은행이 수표를 가진 사람의 의뢰로 수표를 제시 지급하는 일)하는 은행이 수표 내용을 전자적 형태로 작성한 정보를 송신하고 어음교환소가 이를 수신한 것에 대해서도 실물수표와 같은 효력을 가지게 된다.

예를 들어 현재 은행 직원들이 업무 마감 후 고객들이 제시한 수표를 모아 어음교환소에서 일일이 교환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이를 전자문서로 대체할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현재 수표 교환업무에 연간 수백억원 이상의 비용이 낭비되고 있다”며 “개정 법률안은 본격적인 전자수표 도입에 대비, 전자적 수표교환제도가 적법하게 시행될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V. 결 론

2004년 3월 전자어음법이 제정되면서 전자어음제도에 관한 도입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2005년 9월 세계 최초로 전자어음이 발행되면서 시행되면서 국내는 물론이고 국외까지 시행의 성공여부에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전국민의 70% 이상이 인터넷을 사용해 전세계에서 가장 높은 비율의 인터넷 인구를 자랑하는 우리나라로서는 전자어음의 도입이 무엇보다도 반가운 일이다.

특히 금융결제원이 적발한 위조어음만도 4,000장에 이르고 액면가 기준으로는 수천억원에 이르는 점을 감안할 때 전자어음의 도입은 어음의 신뢰성과 투명성 제고 등 긍정적인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전자어음은 관리기관 시스템 안에서만 생성·유통되기 때문에 조세포탈 등을 목적으로한 음성적 거래를 막아주며 전자어음관리기관이 어음 발행인의 주거래 은행과 신용조사기관의 신용평가 내용 등을 참고하도록 해 어음의 부도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기대와는 달리 전자어음제도는 기업들이 정서적으로 거부감을 느낄 가능성이 높다. 일반적으로 전자어음제도는 시중은행의 어음발행·유통을 중심으로 한 시스템이므로 상호저축은행이나 새마을금고 같은 제2금융권에서 어음을 할인해 급한 돈을 쓰는 중소기업들은 혜택을 보기 어려울

것이며, 상행위가 이루어지려면 대면거래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하는데, 어음을 인터넷으로 주고받으면 기업들은 상당한 불편을 느낄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에 대해서 금융결제원은 온라인 어음할인 중개시장을 만들겠다고 밝히고 있으며, 해킹방지를 위한 안전장치도 마련할 계획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중소기업을 비롯한 기업의 경쟁력도 훨씬 커질 것으로 기대되어진다.

전자어음제도는 전자어음법을 통해 첫 시행되었고, 앞으로는 전자수표도 도입을 할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거래과정에서 생기는 문제점들은 전자어음관리기관인 금융결제원을 비롯한 많은 관련기관과 전자어음관리기관의 신뢰도를 인정해 주는 기업들간의 노력을 통해 세계 최초로 시행하는 전자어음제도가 국내외의 표본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 강현구,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제정에 관한 공청회”, 국회법제사법위원회, 2003.05.
- 고명규, “전자어음법의 검토”, 「기업법연구」, 제19권 제3호, 한국기업법학회, 2005.09.
- 권중호, “전자어음제도의 도입과 법리적 과제”, 「비교사법」, 제10권 1호, 한국비교사법학회, 2003.3.
- 나승성, “전자어음의 법적 문제점 검토”, 「인권과 정의」, 제323권, 2003.07.
- 백미연, “국내외 수표 전자정보교환제도 도입 현황”, 「지급결제와 정보기술」, 제22호, 금융결제원, 2005.10.
- 변양호,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제정에 관한 공청회”, 국회법제사법위원회, 2003.05.
- 양석완, “전자어음의 전자문서성과 증거법상의 문제”, 「동아시아논총」, Vol.15.No.1, 제주대학교 동아시아연구소, 2004.
- 이철송, “전자어음의 어음성”, 「인터넷법률」, 통권 제24호, 법무부, 2004.07.
- 손기선,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제정에 관한 공청회”, 국회법제사법위원회, 2003.05.
- 장인수, “전자어음의 도입효과와 활성화 과제”, 「지급결제와 정보기술」, 제19호, 금융결제원, 2005.1.
- 정경영, “어음의 전자화에 따른 법적 문제점 고찰”. 「비교사법」, 제10권 1호, 한국비교사법학회, 2003.3.
- _____, “전자금융거래법안의 개요와 전망”, 「인터넷연구」, 제3권 1호, 한국인터넷법학회, 2004.03.
- _____, “전자결제제도의 법적 문제”, 「비교사법」, 제7권 2호, 한국비교사법학회, 2000. 12.
- _____, “전자어음제도의 법률적 문제점”, 「인터넷법률」, 통권 제24호, 법무부, 2004.07.
- 정완용, “전자상거래 지급결제제도와 전자식 유가증권 제도에 관한 연구”, 「법률제도위킹그룹보고서」, 한국전자거래진흥원, 2002.1.
- 정운성, “지급결제서비스 성공요인과 향후 개발방향”, 「지급결제와 정보기술」, 제22호, 금융결제원,

2005.10.

정찬형, “전자어음법의 문제점에 관한 소고”, 「인터넷법률」, 통권 제24호, 법무부, 2004.07.

정쾌영, “어음과 수표의 전자화에 관한 고찰”. 「대한경영학회지」, 제41호, 대한경영학회, 2003.

조정환,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제정에 관한 공청회”, 국회법제사법위원회, 2003.05.

최석범, “전자환어음의 도입방안에 관한 연구”, 「국제상학」, 제20권 제1호, 한국국제상학회, 2005.03.

전자어음의발행및유통에관한법률, 2004.03.22.

http://www.supercheck.co.kr/solution/sub_01.asp, 2006.02.11.

<http://economy.hankooki.com/1page/opinion/200502/e2005020118360548010.htm>, 2005.09.28.

http://news.naver.com/print_form.php?office_id=078&article_id=0000..., 2006.01.13.

<http://www.hani.co.kr/section-004000000/2001/05/004000000200105181903002.html>, 2005.10.25.

http://news.naver.com/news/read.php?mode=LSD&office_id=029&article_id=00001..., 2005.11.27

http://biz.wooribank.com/pot/biz/good/elfn/wbgud521_04c.html, 2005.11.22.